

예 산 총 칙

2011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732,211,203	21,966,336
일반회계	564,281,821	16,928,455
특별회계	167,929,382	5,037,881
공기업특별회계	28,942,755	868,283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645,677	49,37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7,297,078	818,912
기타특별회계	138,986,627	4,169,599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3,696,520	710,896
주택사업특별회계	2,910,705	87,321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3,526,631	105,799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1,040,000	31,200
기반시설설치 및 운영 특별회계	36,000	1,080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8,259,614	247,788
교통사업특별회계	5,451,350	163,541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94,065,807	2,821,974

제 2 조 세입·세출예산 명세는 별첨 " 세입·세출예산 "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 채무부담행위조성 " 와 같다.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 계속비사업조서 " 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 사업은 별첨 " 명시이월사업조서 " 와 같다. (해당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 6,512,072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35,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